

2023년도 KOLNG 특별기금 인력양성사업 계획 공고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은 자원개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기업 임·직원의 역량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산업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KOLNG 특별기금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니 자원개발 기업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분야

- 자원개발 분야 산학장학금 지원
 - 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의 사업 지원
 - 자원개발 기업 및 기관 직원의 국내외 연수·교육 지원
- ※ 지원분야별 모집요강 「첨부」 참조

□ 지원방법 및 일정

- 신청자 : 자원개발 관련 기업 및 기관
- 접수기간

차수	대상자 지원	접수 기간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공고
1차	1~3월	'22.12.1~12.9	12월	선정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
2차	4~6월	'23.3.2~3.10	3월	
3차	7~9월	'23.6.1~6.9	6월	
4차	10~12월	'23.9.1~9.8	9월	

- 지원방법 : 자원개발 기업(기관)은 추천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에 대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e-mail 제출
- 선정방법 : KOLNG 특별기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기준」(별첨)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선정
- 선정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www.fored.or.kr)에 공고
- 접수처 및 문의 : ☎ 02-3453-4057 / ☐ eblee@emrd.or.kr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실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홈페이지(www.fored.or.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원 분야별 모집 요강 1부.

<별첨> KOLNG 특별기금 인력양성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운영기준 1부. 끝.

<첨부>

지원 분야별 모집 요강

1. 산학장학금 지원

① 피추천인 자격(「운영기준」 제5조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 국내에서 자원개발 분야 학사,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누적 평점 B학점 이상
- 국내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

② 선정인원 : ○명

③ 지원내용

- 학기별 등록금 및 연구보조비(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④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 추천서	▶ 「운영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 산학장학생 후보자의 이력서	▶ 「운영기준」 별지 제8호 서식
▶ 산학장학생 후보자의 재학증명서	
▶ 산학장학생 후보자의 성적증명서	
▶ 연구계획서	▶ 「운영기준」 별지 제9호 서식 (※ 연구보조비 신청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	▶ 어학증명서, 자격증 등

2. 자원개발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의 사업 지원

① 피추천 기관 자격(「운영기준」 제20조)

-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대학·단체
- 정관상 자원개발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원개발 연구기관·단체

② 선정단체 : ○개

③ 지원내용 : 자원개발 단체의 사업(행사) 지원

- 자원개발 연구기관·대학·단체의 일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함

④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 추천서	▶ 「운영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 단체의 현황	▶ 「운영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지원 사업비의 사업계획서	▶ 「운영기준」 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	▶ 정관 등

3. 자원개발기업 및 기관 직원의 국내외 연수·교육 지원

① 피추천인 자격(「운영기준」 제13조)

- 자원개발관련 기업(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선정인원 : ○명

③ 지원내용 : 교육참가비 및 여비

- 교육참가비 : 실비 지급
- 여비 : 일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 여비 지급 기준액은 「운영기준」 <별표4> 참조

제출서류	비 고
▶ 추천서	▶ 「운영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 국내외 연수·교육 후보자의 이력서	▶ 「운영기준」 별지 제7호 서식
▶ 국내외 연수·교육 후보자의 연수·교육 계획서	▶ 「운영기준」 별지 제3호 서식
▶ 기타서류	▶ 영어 어학성적 및 자원개발관련 자격증 등

4. 선정 절차

- ① 선정 공고(' 22.11월) → ② 추천서류 접수(출연사 등 자원개발 관련 기업/기관)
→ ③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 ④ 결과 공고 → ⑤ 선정대상자 지원

*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기준」 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 선정